

서울노원우체국 부설숙사 입주자 모집 공고(2차)

서울노원우체국 부설숙사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서울노원우체국장

1. 입주신청 대상물

- 서울상계 1동우체국 2층 숙사(86.35㎡)
- 서울상계 3동우체국 2층 숙사(68.98㎡)
- 서울상계 6동우체국 2층 숙사(81.25㎡)

2.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및 자격)

① 1순위 : 서울노원우체국 소속직원(상시계약집배원, 택배원 포함)중 단독세대가 아닌 직원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신청 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자

- ② 2순위 : 단독세대 무주택 직원
- ③ 3순위 : 우정사업본부 소속 무주택 직원
- ④ 4순위 : 1~3순위 이외의 자(민간인 포함)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8. 6. 1.(금) ~ 6. 8.(금) (09:00 ~ 18:00)
- 접수처 : 서울노원우체국 지원과
- 제출서류
 - ① 부설숙사 입주신청서 1통(별지 제1호 서식)
 -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
 - ③ 무주택증명서 1통
- 예비 입주자 선정 : 2018. 6. 11.(월) 개별통보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자격이 취소됨
- 입주가능 시기 : 2018.06.11.부터

4. 사용료(대부료)

대상(숙사)명	공부면적(㎡)	사용료(대부료) (원)		비고
		연간	월단위 환산	
상계1동우체국 2층 숙소	86.35	5,010,570	417,550	공실
상계3동우체국 2층 숙소	68.98	3,177,350	264,780	공실
상계6동우체국 2층 숙소	81.25	11,402,790	950,230	공실

5. 기타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과(정현경 950-3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주거용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월액(연액 또는 일액)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며 퇴거하는 달의 대부료는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가 월액으로 납부할 경우 년 월 일까지 첫 달의 대부료를 내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일에 대부료를 내야 하며, 대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2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제5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

② 보험금액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6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소모성 비품의 교체·수선에 드는 비용, 그 밖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대부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7조(대부받은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3. 대부재산에 시설물의 설치
4. 대부재산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3.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질서문란 행위, 수리 거부 등 관리기관 등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밖에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